
「 」

[2010. 3.19] [22075 , 2010. 3.15,]
() 02 - 2023 - 7513

1 () 「 」
. < 2005.11.1 >

2 () 「 」 (" ") 2 1 2
. < 2005.3.18, 2005.11.1, 2006.8.4, 2009.12.15 >

1. 「 」
2. 「 」
3. 「 」 10 1
2 1 3 .<
2005.11.1 >

- 1.
2. 「 」
3. 1 1

3 () 2 1 8 " " 1
. < 2001.7.7, 2004.5.25, 2005.11.1 >

1. 「 」 3 2
2 (「 」 2 2)
2. 「 」 1
3. 「 」 2
4. 「 」 가 2
가()
5. 「 가 」 2
6. 「 」 1

4 () 2 2 .

1. (): . . . ,
,
2. (): . . .

3. (): 1 2

[[2008.6.30](#)]

5 <[2003.4.4](#)>

6 () 6 2 4 " "

7 <[2003.4.4](#)>

7 2() 11 2 2

1

< [2008.2.29, 2010.3.15](#) >

()
1 2 1 가

가 3

[[2003.4.4](#)]

7 3() 11 2

1 20 . .

가 7

2 . .
2 . .

< [2008.2.29, 2010.3.15](#) >

[[2003.4.4](#)]

8 () 15 . . (" .
") . . 1

< [2003.4.4, 2005.11.1](#) >

1. 2

2. 「 」 . .

3.

4.3

• • • 1 1 가
2

.< 2005.11.1 >

9 () 15 .

1. 3 1

2. 4 • ,

3. 5 •

4. 10

5. 11 ,

6. 17

[2003.4.4]

9 2() 15 2 1 ("

") • 가 1 .< 2005.11.1 >

1.

2. ,

.< 2005.11.1 >

1.

2.

3. • 가

• 가

.< 2005.11.1 >

• 가 .< 2005.11.1 >

[2003.4.4]

10 () 16 .

10 2() 19 2 ,

1. : 5 500

2. : 3

[2005.11.1]

11 () 22 2 .

[2008.6.30]

< 22075 ,2010. 3.15 >

1 () 2010 3 19 . < >

2 () <16 >

<17 >

7 2 1 7 3 6 " 가 " " " .

<18 > <187 >

25	8,600 이상~	10,000 미만	258,000
26	10,000 이상~	12,000 미만	267,000
27	12,000 이상~	15,000 미만	276,000
28	15,000 이상~	20,000 미만	285,000
29	20,000 이상~	25,000 미만	294,000
30	25,000 이상~	30,000 미만	303,000
31	30,000 이상~	35,000 미만	312,000
32	35,000 이상~	40,000 미만	321,000
33	40,000 이상		330,000

[별표 1] <신설 2003.4.4>

과징금 산정기준(제7조의2관련)

1. 일반기준

가. 영업정지 1월은 30일로 계산한다.

나. 과징금 부과 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은 당해 업소에 대한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 1년간 총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한다. 다만, 신규사업·휴업 등으로 인하여 1년간의 총 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거나 1년간의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기별·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산출 또는 조정한다.

2. 과징금 부과기준

등급	전년도 연간 총 매출금액 (단위 : 백만원)	영업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 (단위 : 원)
1	30 미만	30,000
2	30 이상~ 100 미만	41,000
3	100 이상~ 200 미만	52,000
4	200 이상~ 350 미만	63,000
5	350 이상~ 510 미만	74,000
6	510 이상~ 680 미만	85,000
7	680 이상~ 860 미만	96,000
8	860 이상~ 1,040 미만	105,000
9	1,040 이상~ 1,240 미만	114,000
10	1,240 이상~ 1,460 미만	123,000
11	1,460 이상~ 1,710 미만	132,000
12	1,710 이상~ 2,000 미만	141,000
13	2,000 이상~ 2,300 미만	150,000
14	2,300 이상~ 2,600 미만	159,000
15	2,600 이상~ 3,000 미만	168,000
16	3,000 이상~ 3,400 미만	177,000
17	3,400 이상~ 3,800 미만	186,000
18	3,800 이상~ 4,300 미만	195,000
19	4,300 이상~ 4,800 미만	204,000
20	4,800 이상~ 5,400 미만	213,000
21	5,400 이상~ 6,000 미만	222,000
22	6,000 이상~ 6,700 미만	231,000
23	6,700 이상~ 7,500 미만	240,000
24	7,500 이상~ 8,600 미만	249,000

과태료의 부과기준(제11조 관련)

1. 일반기준

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횟수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해당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.

2. 개별기준

위 반 행 위	근거법령	과태료
1. 법 제3조제2항을 위반하여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	법 제22조제1항제1호	30만원
2. 법 제4조제2항을 위반하여 목욕장의 욕수 중 원수의 수질기준 또는 위생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로서 법 제10조에 따른 개선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	법 제22조제1항제1호의2	100만원
3. 법 제4조제2항을 위반하여 목욕장의 욕수 중 욕조수의 수질기준 또는 위생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로서 법 제10조에 따른 개선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	법 제22조제1항제1호의2	70만원
4. 법 제4조제3항 각 호 및 제7항을 위반하여 이용업소의 위생관리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자	법 제22조제2항제1호	50만원
5. 법 제4조제4항 각 호 및 제7항을 위반하여 미용업소의 위생관리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자	법 제22조제2항제2호	50만원
6. 법 제4조제5항 및 제7항을 위반하여 세탁업소의 위생관리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자	법 제22조제2항제3호	30만원
7. 법 제4조제6항 및 제7항을 위반하여 위생관리용역업소의 위생관리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자	법 제22조제2항제4호	30만원
8. 법 제4조제7항을 위반하여 숙박업소의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지 아니한 자	법 제22조제1항제2호	50만원
9. 법 제4조제7항을 위반하여 목욕장업소의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지 아니한 자	법 제22조제1항제3호	50만원
10. 법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	법 제22조제	70만원

이용 또는 미용업무를 행한 자	2항제5호	
11. 법 제9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계공무원의 출입·검사, 기타 조치를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자	법 제22조제1항제4호	100만원
12. 법 제10조에 따른 개선명령에 위반한 자	법 제22조제1항제5호	100만원
13. 법 제11조의5를 위반하여 이용업소표시등을 설치한 자	법 제22조제1항제6호	70만원
14. 법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	법 제22조제2항제6호	20만원